

#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년 6월 일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고
- 수탁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운영 계약 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군수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게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차기 운영자를 심의 결정토록 하며
-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「농·축·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」를 「농·축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」로 단체명칭을 변경(제6조 제①항 제1호)
- 나.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」토록 함(제6조 제②항)
- 다. 위탁운영기간을 「2년」에서 「3년」으로 하고, 「운영기간을 연장신청 할 경우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.」함.(제6조 제③항)
- 라. 수탁운영 수수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에서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」규정.(제6조 제④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산림조합 제3조(별첨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; 해당없음
- 마. 신규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제1항제1호중 "임업협동조합" 을 "산림조합"으로 하고,동조제2항중 "군수에게" 앞에 "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"를 삽입하며 동조제3항중 "2년"을 "3년"으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"다만,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"

동조제4항 단서중 "1,000분의 10으로 한다"를 "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"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###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1. ----- <u>임업협동조합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4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----- <u>2년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(단서신설)</p> <p>④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1,000분의 10</u>으로 한다</p>	<p>제6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산림조합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4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<u>수탁운영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</u>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----- <u>3년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다만, <u>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□ 산림조합법(시행일 : 2000. 5. 1)

제3조 (명칭) ①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, 전문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, 중앙회는 산림조합 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·산림조합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